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 제3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3년 제3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1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1. 최종합격자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하며 불합격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수험번호 순)

구분	지원분야		응시번호
정규직	심사직 다급	서울본원	0248-000039
		부산지원	0249-000001 0249-000023
	일반직 6급(회계)		0250-000081
무기계약직	일반업무직 라급(정보화)		0251-000006
기간제근로자	전문업무직 다급(조사직)		0252-000008
	일반업무직 라급(일반행정)		0253-000006

⇒ 서류제출 기한 내 임용동의서 등의 필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합격자에게 기회가 부여되므로 최종합격자는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6개월

구분	예비합격자		
	순위	응시번호	
정규직	심사직 다급 (서울본원)	예비1	0248-000008
		예비2	0248-000002
	심사직 다급 (부산지원)	예비1	0249-000018
	일반직 6급 (회계)	예비1	0250-000026
기간제	전문업무직 다급 (조사직)	예비1	0252-000005

3. 최종합격자 안내 사항

□ 제출서류 (필수사항, 원본제출)

- 임용동의서 * 반드시 자필 기재
 -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반드시 자필 기재
 - 직원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주민등록등본 2통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1통
 - 반명함판 사진(3×4cm) 2매(상반신,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 증명서류 원본 일체(장애인등록증*,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등)
- * 중증장애인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 제출
- ※ 모든 서류는 최초 모집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제출방법

○ '23. 4. 24.(월) 17:00까지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우편발송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20층 인재개발팀

□ 임용예정일 : '23. 5. 1.(월) ※ 첫 출근: 5. 2.(화)

* **임용일 출근장소·시간**

- (본원합격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본원 18층 강당, 09:00까지

- (부산지원합격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 09:00까지

채용 관련 일반사항, 서류반환, 이의신청 등 유선 문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채용담당자 : 02-6210-0134

○ 응대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임 용 동 의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본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 직원채용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귀 원의 직원 임용절차에 동의하오며, 내부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이 된 경우,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본인의 제반사항이 근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 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하여도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2023 . . .

합 격 자 : (서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 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1, 2, 3-1, 3-2(모두충족시)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해당여부 ----- 해당 비해당

1, 2, 4-1, 4-2, 4-3(모두충족시)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해당여부 ----- 해당 비해당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년 일

지 원 자

(서명)